

접 수	의안과 - (2011. 08. 04. 16: 00)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다문화가정 지원 및 교육부문의 개선에 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2부
 2. 청 원 서 2부. 끝.

2011년 08월 04일

청 원 인

성 명 : 배한나 (인) 외 국제협력위원회(법인)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동문굿모닝힐
 103동 701호

전화번호 : 052-247-5983 (휴대전화:010-4056-5983)

소개의원 : 최유진, 송현영, 임경원, 원효정, 조채현, 김도희, 이현승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동문굿모닝 103동 701호
	성명 : 배 한 나
건명	다문화가정 지원 및 교육부문의 개선에 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08월 04일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청원할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정 지원 및 교육부문의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니는 모호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구체적인 대응정책이 미비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지원법률의 개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확충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도우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위원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4-①, 제 5조, 제 3조 4-③-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골자

A. 제 3조 4-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여성가족부 산하로 이동하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 교육부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다.

B.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 여성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역적 특성(인구 수,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을 고려한다.

(2)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C. 위원장, 부위원장 및 외부인사(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각각 차관이상) 가 협의 및 토의하여 다수의 인원을 추천한다. 추천된 인원 중에서 1.5배수를 기존위원들의 심의하에서 후보로 선출한다. 기존의 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상위 1배수를 선출한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p>제 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p> <p>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 4-③-2</p> <p>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p>	<p>제 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p> <p>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여성가족부</u>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내 교육부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p> <p>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p> <p>(1) 여성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지역적 특성(인구 수,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을 고려한다.</p> <p>(2)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p> <p>-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p> <p>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 4-③-2</p> <p>위원장, 부위원장 및 외부인사(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각각 차관이상) 가 협의 및 토의하여 다수의 인원을 추천한다. 추천된 인원 중에서 1.5배수를 기존위원들의 심의하에서 후보로 선출한다. 기존의 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상위 1배수를 선출.</p>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국제협력위원회가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청원서

다문화가정 지원 및 교육부문의 개선에 대한 청원

1. 제안이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현재 10명 중 4명이 고등학교진학을 포기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언어벽에 부딪혀 부적응 심각하여, 한국에 대한 불만·분노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취학이 대상 9300여명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으나, 학교 뛰쳐나가 공장으로, 거리로 내몰려 사회문제의 ‘불씨’가 되었는데, 다문화 가정의 4년내 이혼율이 79%인 불안한 가정환경이 주원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76%이 “한국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응답했다.

2. 주요골자

국제협력위원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4-①, 제 5조, 제 3조 4-③-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제 3조 4-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여성가족부 산하로 이동하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내 교육부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다.

B.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 여성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역적 특성(인구 수,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을 고려한다.

(2)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C. 위원장, 부위원장 및 외부인사(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각각 차관이상) 가 협의 및 토의하여 다수의 인원을 추천한다. 추천된 인원 중에서 1.5배수를 기존위원들의 심의하에서 후보로 선출한다. 기존의 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상위 1배수를 선출한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제 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조의 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u>여성가족부로</u>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내 교육부문을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 4-③-2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 여성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역적 특성(인구 수,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등)을 고려한다.

(2)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 4-③-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외부인사(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각각 차관이상) 가 협의 및 토의하여 다수의 인원을 추천한다. 추천된 인원 중에서 1.5배수를 기존위원들의 심의하에서 후보로 선출한다. 기존의 임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상위 1배수를 선출.

청원인 성명 : 배한나

청원인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동문굿모닝힐 103동 701호

청원인 전화번호 : 052-247-5983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

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